

2008. 3.

#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② 충주시시민대상 운영조례안
- ③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④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總務委員會

#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2.26	2008.2.27	2008.3.4	2008.3.4	곽호종 의원
② 충주시시민대상 운영조례안	"	"	"	"	총무과장
③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심종섭 의원
④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회계과장
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강명권 의원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하기 위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재향군인으로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안 제2조)
-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전, 표창, 위문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공익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 **나.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 **1) 제안이유**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혼신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자긍심과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안 제2조)

- 1) 문화, 예술, 언론부문
- 2) 교육, 체육부문
- 3) 산업경제부문
- 4) 사회봉사윤리부문

나.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및 과거 5년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함.(안 제3조)

다. 시상대상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안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라.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대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 등을 수여함.(안 제9조)

#### **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민간자율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돋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꾸고자하는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원활한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
- 나. 새마을운동조직이라함은 충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충주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충주시지부로 함(안 제2조)
- 다.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라.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구내의 토지 매각 시 적용할 분할상환 이자율 및 상환 기간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기업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 4%의 이자를 붙여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제1항)

## 마.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써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또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분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의사자'와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나. 적용범위를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한하여 적용  
(안 제3조)

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 추진(안 제4조)

-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 시설의 이용료 감면
-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공적개재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고 전역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재향군인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 육군 ·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되어있음.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된 사업은 법 제4조의2에
  -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 위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조례안의 핵심인 제4조 예우에 대하여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차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로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 각호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제3호의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음.

덧붙여서 각호의 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이 특별히 타 조례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로, 충주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약 70여개 단체가 됨. 본 조례가 타 단체에 대한 영향력과 형평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나.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15회에 걸쳐 우륵문화제 행사 때에 시상해오던 충주시문화상을 문화제 행사의 일부라는 작은 이미지를 벗어나 큰 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시민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포상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상자에게도 충주시민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크게 고취시키고자 충주시문화상을 충주시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 제2조의 시민대상부문에 있어 문화상의 7개 부문에서 4개부문으로 축소한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분야를 통합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안 제2조 심사기준에 수상대상자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았음.

- 기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상대상자 결정 등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 등은 충주시문화상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 조례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안 제9조 시상에서 수상대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작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자목, 제4호 가목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민간자율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임.

- 조례안에서 제3조의 보조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운영비와 새마을 사업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현행 보조금 지원절차를 준용 토록 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됨.

- 충주시새마을회 등 지원대상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충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겠으나

과호종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집행부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단체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지원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 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공유재산인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할 납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매도금액을 10년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에 20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고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서 연 4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한 바,
- 개정조례안에 사업시행자인 기업이 좋은 조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저이율인 4퍼센트를 붙이도록 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마.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범위내에서 예우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의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충주시에서 의사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2명으로 그 수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나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 답변 요지

##### 가.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고 타 단체 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 답변 :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나.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 ▶ 질의 : 부상지급에 관한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데 조례에 반영한 이유는?
- 답변 : 선거법이 개정되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부상을 지급하기 위함임.
- ▶ 질의 : 충주문화원과 예총충주지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 답변 : 수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을 축소하려는 시의 계획에 어긋나고 조례안과 시행규칙에 함축되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음.

## **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질의 :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고 타 단체 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 답변 :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원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님. 타 단체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 질의 : 새마을 단체의 구성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이 타당한 일인데 이를 하지 않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 답변 :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범위가 다르고 그 수혜를 받게 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 **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20년간 토지매입비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해줄 이유가 있는가?
- 답변 : 기업도시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질의 : 기업도시 사업 대상부지에 시유지가 몇%인가?
- 답변 : 46.6% 정도 됨.
- ▶ 질의 : 시에서 이율을 낮추게 되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가?
- 답변 : 조성원가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입주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 **마.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없음

##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류  
나.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보류
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마.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6. 끝 임

- 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수정안 1부.
- 나.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다.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끝.

##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제1항 중 “상폐와 부상 등을”을 “상폐를”로 하고 항 번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시상)①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시상하며, 시상대상자에게 <u>상폐와 부상 등을</u>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부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p>	<p>제9조(시상)&lt;항번호 삭제&gt;----- -----<u>상폐</u> 를----- -----</p> <p>&lt;삭 제&gt;</p>

##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4호 중 “행·재정적”을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생 략) 1.~3. (생 략)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u>행·재정적</u> 지원 등	제5조(제정안과 같음) 1.~3. (제정안과 같음) 4. _____ -----<삭제>-----